

한국가족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체성*

Women's Identity in the Korean Family Welfare Policies*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아시아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미석, 송인자*, 한정원*

College of Life Scienc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Senior Researcher*
Park, Mee sok, Song, In Ja*, Han, Jeong Won*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한국가족복지정책과 여성정체성 |
| II.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 V. 결론 및 제언 |
| III. 한국가족복지정책의 현황 | 참고문헌 |

<Abstract>

By analysing women's identity rooted in Korean families and welfare policies related to families,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more gender-equal family welfare policies for the futur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hange of families along with social changes, women's identity in families, the present family welfare policies, and women's identity in the family welfare policies.

Social changes and the demand of market make influence on function and form of families. However, the broad social format of patriarchy persists and women's gender identity and gender role in families make little differences as ever. These women's gender role and gender identity are found in welfare policies related to families as they are. The woman is regulated as dependent on male partner with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n child rearing and elderly care. In addition, only focusing on families in need, Korean family policies are not generally established.

Therefore, now,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Korean family policies concerning more diverse families

Corresponding Author: Song, In Ja,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ungpa-dong 2-ka, Yongsan-ku, Seoul 140-742, KoreaTel: 82-2-2077-7110 Fax: 82-2-714-2269
E-mail: songij@sookmyung.ac.kr

* 본 연구는 2001년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KRF-2001-005-c00033

should be launched with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주제어(Key Words): 가족(family),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 여성정체성(women's gender identity), 보살핌노동(caring work), 가족복지정책(family welfare policy)

I. 머리말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가족주의적 가치를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가족이 사랑과 배려로 충만하다는 믿음이 남아있다. 이와 같이 가족을 중성적(gender-neutral) 개념으로 이해하면 구성원간의 갈등이 없고 협동과 사랑만이 충만한 이상적 공동체로 인식되며, 가족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성역할과 성별분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게 된다. 가족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제한 무한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공간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조선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의 특징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오던 역할이 여전히 부과되어 공사영역에서의 이중역할수행에 따른 부담이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사회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는 다양화하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기대는 달라졌으나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는 안정과 사랑을 제공하지만 여성, 특히 기혼여성에게는 노동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가족관련복지정책이 여성에게 지워지는 이러한 이중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는가? 이러한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고 성평등적 가족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가족복지정책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가족복지정책내에서 여성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상당부분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의해 가족구성원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은 가사노동전담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가

사노동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 시행되는 가족복지정책은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요보호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복지가 여성의 가사노동을 전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속에서의 여성정체성¹⁾은 국가가 주도하는 가족관련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속에서의 여성정체성은 국가의 정책형성의 기반이 되는 한편, 정책의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의 여성 및 가족관련복지정책은 가족내에서의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전담자라는 전통적 역할수행을 기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상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여성이 직업세계에 참여했을 때 육아문제가 가사노동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는 미흡하여 결국은 육아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으로 한국가족과 가족관련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체성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탐색하여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재설정하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된 가족복지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행 가족복지정책은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보호계층이 아닌 일반적 가족에 대한 복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가족복지정책과 더불어 국민연금법, 상해보험관련 보상규정, 모자복지법 등에서 가족관련사항

1) 이 연구에서의 여성정체성이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을 규정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국가, 시장, 가족이라는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각 요인에 영향을 미쳐 여성에 대한 사회인식으로 이어진다. 여성정체성의 형성요인을 <그림 3>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내에서의 여성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에 나타나는 여성정체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양상을 여성역할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복지욕구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을 위해 보살핌노동(caring work)을 전담하다시피하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될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개괄하여 가족내에서의 여성정체성이 가족관련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한다. 가족내에서 요구되는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이 가족복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관련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정체성을 탐색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탐색해 본다. 이를 통해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와 사회변화에 따라 공적영역으로 진출하려는 여성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심도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가족복지정책, 여성에 관련된 선행연구물과 인터넷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사용한다.

II. 한국의 가족변화와 여성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로 애정과 경제력이 개입되며 가족구성원에게 지속적인 사랑과 친밀성이 제공되는 곳이다. 가족 속에서 가족구성원들은 의존성, 연약함, 휴식욕구 등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권력이 행사되어 정서적·경제적 제공의 책임과 의무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을 성(gender)이라는 요인

과 관련시켜 논의한다면 가족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애정에 기반한 희생으로 영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와 여성역할의 변화를 통해 가족속에서의 여성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여성의 역할변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가족은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합계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한 가족규모의 축소 및 가족세대의 단순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친족관계의 약화현상 등의 특징을 지닌다. 가족규모가 축소된 이유는 가족계획정책과 확대가족의 감소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주도하에 적극적인 가족계획정책이 실시되어 이상적 자녀수에 대한 주입과 함께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가족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와 이농,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 등으로 인하여 핵가족화, 소규모화하여 1960년에 6.0명이었던 출산율이 1998년에는 1.47명(〈표 1〉참조)으로 낮아져 가족의 크기는 1960년에 6.8명이었던 것에서 1990년에는 3.8명, 1995년에는 3.3명으로 작아 졌다(한국여성개발원, 1999).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자녀양육시기의 단축으로 이어져 여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일찍 해방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에 따라 가족규모가 축소되었다. 부부-자녀중심의 핵가족이 전형적 가족으로 여겨지는 한편, 가족형태는 다양화하여 독신가구가족, 직업을 갖고 자녀를 갖지 않는 1세대 가족(DINK)의 증가와 1인가족의 증가,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노인단독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표 1〉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 여자 1,000명당 명

년도	1960	1974	1984	1987	1991	1995	1998	2000	2001
합계출산율	6.0	3.6	2.1	1.6	1.74	1.65	1.47	1.47	1.3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1991-2001)

동거가족 등의 비율이 증가하고 주말부부, 가장과 가족이 이민이나 유학으로 떨어져 사는 별거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공존하고 있다. 가구구성 변화와 가족형태별 가구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또한 여성가구의 증가(<표 4> 참조)와 유배우자 가구수 감소, 이혼 가구주비율과 미혼 가구주비율 증가하여 이혼여성 가구주인 한부모가족이 증가하였다. 혼인에서도 남녀간 연령차와 조혼율이 감소하고 조이혼율이 증가하여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등 다양한 구성의 가족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독특한 한국적 상황과 관련된 특성이 중첩되어 있다. 핵가족이 일반화되며 평균수명연장(1970년 63.1세에서 2000년 74.8세)으로 노인가가 증가하고 있으며(<표 2> 참조) 2002년 말 현재 독거노인수는 61만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6.2%를 차지한다(경향신문 2002.12.31). 핵가족화로 인해 노부모와 혼인한 자녀부부가 별도의 가구를 형성해 산다 할지라도 밀착된 심리적 유대관계를

를 갖게되므로 심리적으로는 확대가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겠다. 친족간의 유대와 관련된 현상도 과거에 비해 친정과의 유대가 빈번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의례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계제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 친정과의 관계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유대, 일손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등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시댁과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거나 제사나 재산 상속 시 전통적인 부계제의 관례를 따르고 있는데서 친족간의 유대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사회의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가족관계가 당연시되던 것에서 벗어나 수평적 가족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식이 나타나 부자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여성의 가족내에서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하여 가족내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

<표 2> 세대별 가구구성 변화 단위 : 천가구, %

가구구성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총가구수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세대가구수	8.3	9.6	10.7	13.0	14.2
2세대가구수	68.5	67.0	66.3	63.0	60.8
3세대가구수	16.5	14.4	12.2	9.8	8.2
4세대가구수	0.5	0.4	0.3	0.2	0.2
1인가구	4.8	6.9	9.0	12.7	15.5
비혈연가구	1.5	1.7	1.5	1.4	1.1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3> 가족형태별 가구의 변화 단위 : 천가구, %

가족형태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전국 가구수	9,571	11,355	12,958	14,312	
핵가족	부부	7.8	9.3	12.6	14.8
	부부+미혼자녀	57.8	58.0	58.6	57.8
	편부모+미혼자녀	9.7	8.7	8.6	9.4
직계가족	부부+양(편)친	0.8	0.9	1.1	1.1
	부부+양(편)친+자녀	9.9	9.4	8.0	6.8
	기타가족	14.0	13.8	11.2	10.1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표 4> 성별 가구주의 변화

단위 : %

가구주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남 성	87.2	85.3	84.3	84.3	83.4	81.5	81.3
여 성	12.8	14.7	15.7	15.7	16.6	18.5	18.7

(자료: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기회의 확대, 출산을 감소로 인한 육아부담감소,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의 단축, 그리고 산업구조의 소프트화로 인한 여성직종의 증대, 이로 인한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여성의 가족내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1963년 37%에서 1980년 41.8%, 1997년에는 49.5%까지 올라갔던 것이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장 심했던 1998년에는 47.0%로 떨어지고 1999년에는 47.4%가 되었다(통계청, 해당연도)²⁾.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평등한 부부관계로의 지향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사노동은 거의 주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부간의 역할분담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불평등한 역할분담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남성중심의 체제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 사회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만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여성의 생산적 역할에로의 진출은 인정하되 가정에서의 여성역할에 1차적 중요성을 두고 있어 우리 사회의 혼재된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장요구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족내 구성원의 역할변화, 특히 남녀의 역할변화는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며 이는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고가 내면화 되어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노동시장내에서 경제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위한 지원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에 노력하고,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족복지, 여성복지 차원에서 탁아나 보육기관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한국가족에서의 여성정책

앞에서 살펴 본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난 가족구

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변화를 기반으로 여기서는 가족속에서의 여성정책을 정리해 본다.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하는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표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가족속에서의 여성정책을 다음의 몇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은 가사노동전담자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외법에 의해 사적·재생산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일로 규정되고,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무보수의 노동(unpaid work)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전업주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한편, 시장노동에 참여한 취업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아내의 몫으로 생각하여 맞벌이의 경우도 가사노동은 여성이 전담하는 가정일로 여겨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지위를 가사노동의 무급의 특성과 연결지어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지위는 '경제무능력자' 정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시간없이 무한정 이루어지지만 소득과 승진 등의 가시적 혜택이 없어 무직자로 취급되어 가정주부인 여성을 남편의 경제적 의존자로 인식한다.

둘째, 가족내에서 여성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규정되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결정과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중요한 집안일은 공동결정하나 주

2)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이루어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은 생계책임자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정리해고의 우선 대상이 되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파견근로제 도입 등으로 여성의 고용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 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여성가장에게 특별히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가장들의 경우 실직하면 다른 생계대책이 없고, 대부분이 저학력, 저기술로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택이나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물품 구입, 재산의 증식과 매각, 투자에 관한 결정은 남편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등기되고 있으며, 법률상 재산의 명의자가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성은 재산과 관련한 분쟁에서 불리하다. 부부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에 대해 공정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청구권을 1990년에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혼인후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기여한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아 (www.bupdori.com/04-10-05.htm)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셋째, 여성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및 사회화를 위한 역할은 어머니에게 부과되며, 여성이 직업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기여해도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책임은 여성의 몫으로 돌려지는 상황이다. 가정내 부모의 성역할 분담은 자녀세대에 대해 암묵적으로 내면화되는 사회화 과정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자녀에게 허용되는 성별 규범적 태도의 선택 폭은 넓지 못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성별이원론에 입각한 차별적 사회화를 통하여 여아는 '여자답게', 남아는 '남자답게' 길러진다.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와 교육투자면에서는 성별취학률의 변화를 통해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중학교는 1970년 61.1%(남), 40.6%(여)에서 1997년부터는 여학생의 취학률이 0.5% 더 높으며 고등학교는 1970년 34.2%(남), 21.6%(여)에서 1997년 95%(남), 94.3%(여)로 나타나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변화순외, 2001).

넷째, 여성은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되고 있다. 최근 장남이외의 아들이나 기혼의 딸, 손자녀의 집에서 사는 비율 증가하여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는(손승영, 1992) 경향을 볼 수 있지만 노후에 홀로 되거나 병이 나면 자녀와 합치기 원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는 전통적 가족문화의 한 특징인

“효”사상에 기반하여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사상은 현재의 경제적, 신체 및 정서적 노인부양으로 이어져 가족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치규범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인부양은 경제적인 면보다 신체적 및 정서적인 면에 큰 비중이 두어지며 이는 여성의 보살핌노동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상응하는 남성의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부양은 가족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여성노동에 의존한 부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부모부양에 대한 기대와 책임에서 남녀가 평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여성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원의 제공자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안정 및 유대는 아내의 사회-정서적 지원 역할과 어머니의 모성이 강조됨으로써 가족은 여성과 동격시(민경자, 1993)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가정은 타 가족원에게 은신처 또는 최소한의 여가 장소로 경험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에게 가정은 노동의 장소(이재경, 1997)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남편이나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은 전통적으로 요구되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가운데 직업세계에 참여하는 상황이며 남녀의 지위와 역할은 재래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로 그치고 큰 줄거리는 남녀유별의 봉건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남편의 직업이 우선하며 아내의 직업활동은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주부역할과 취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만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른바 “신전통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가사일과 직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해도 여성에게는 가족내의 역할이 우선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전업주부에게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미적용으로, 취업주부에게는 가

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이중부담과 함께 여성취업이 보조적 생계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됨으로써 복지혜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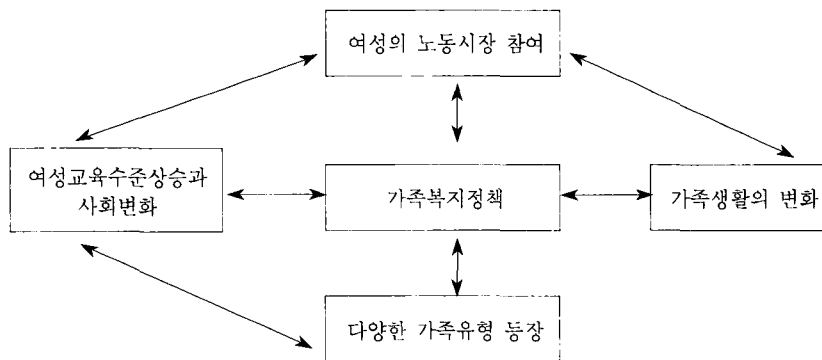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취업은 기존의 성별분업에서 요구되던 여성의 역할에 취업에 따른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이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노인부양에 있어 큰 부담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내에서 경제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위한 지원 미흡한 상태이다. 여성이 고용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가족복지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III. 한국가족복지정책의 현황

가족복지는 가족생활을 보호, 보장, 강화하고,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반 복지서비스활동을 의미(조홍식 외, 1999)하며, 가족복지정책이란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하는데 있어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개입적 활동(김성천외, 2000)”으로 “가족의 구조, 기능적 역할을 보호

하고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족구성원 및 전체 가족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변화순외, 2000)”이다. 즉 가족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의 예방과 치료, 사회변화에 따른 기능조정, 자활능력을 갖지 못한 가족의 지원, 그리고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으로 가족이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또한 그러한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변화순외, 2000에서 재인용).

한국은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지고 가족구성원의 보호책임은 가족에게 있으며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한의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복지의념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의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은 국가가 분담하고 보완해 주어야 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족원의 부양,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가족성원과 사회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족에 의한 복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가족은 사적 영역으로 취급되어 국가의 개입에 부정적이었으나 사회변화,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 인구노령화로 인한 문제발생은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되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복지정책의 형성



<그림 1> 가족복지정책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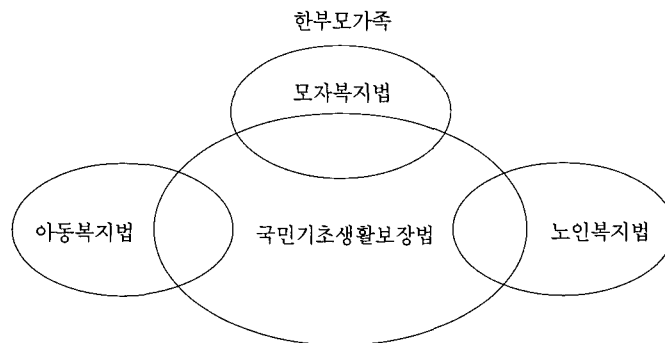
요인을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상승과 노동시장참여, 다양한 가족유형등장과 가족생활의 변화로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복지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불가능한 요보호계층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소득과 의료를 비롯한 취업과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일반가족을 위한 적극적 의미의 가족복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가족복지정책을 가구유형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가족유형과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가족은 노령, 질병, 기타 노동력 상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지원 정책에 의해 생존권을 보장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가계비, 교육비, 출산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비의 수준이 낮아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힘들며 직업훈련에서도 단순노무기술습득에 머물러 생산적 복지(workfare)로 나가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수혜대상은 아니지만 어렵게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노인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 등은 잠재복지수혜대상자라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있다.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모자복지법을 근거로 한다.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를 데리고 혼자살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모자가장이나, 부자가정이나에 따라 수혜범위가 다르지만 자녀학비, 양육비, 생업금융자, 영구임대주택입주,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부자가정인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입주와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 양육비에서는 모자가정 보다 20여만원을 더 많이 받는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모의 생계를 위한 노동은 마찬가지로이나 모자가정에 양육비혜택을 불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국가의 여성역할에 대한 규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의 사회참여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경로연금, 치매관리사업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노인부양은 성인자녀에 의한 부양에 우선원칙을 두고 노인부양가족에 대하여 각종 조세혜택 등 경제적, 사회적 유인방안을 이용하여 가족내 부양을 유도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경우는 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로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를 받으며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를 추가지급 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가족복지정책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문제발생 후의 사후대응 수준의 정책으로 이러한 가족복지정책으로는 변



<그림 2>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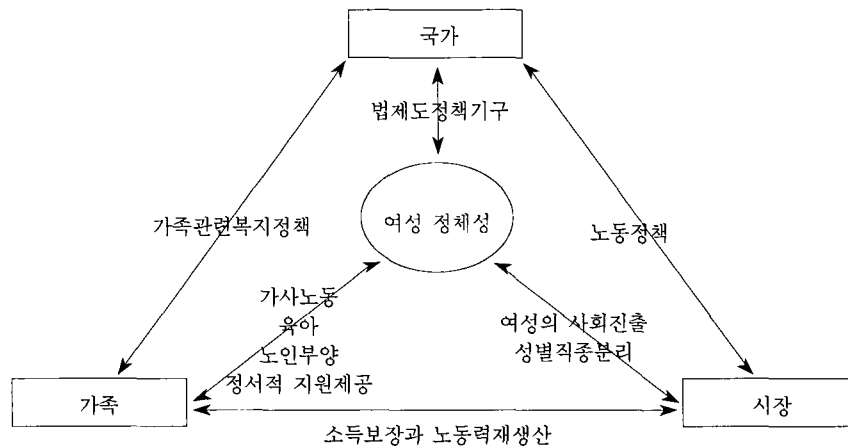
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안정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며 복지 국가의 복지모델인 생산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가족복지정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가족관련 복지정책의 기본적 전제는 국가책임의 최소화와 가족부양책임의 최대화 즉 가족을 위한 복지라기 보다는 가족에 의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가족을 사회안정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단위로 중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국가차원의 뚜렷하며 일관되고 종합적인 가족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족은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정책 및 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는 가족구성원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족복지정책의 범주를 현재 가족복지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가구유형별 복지정책이외에 국민연금법, 상해보험규정, 모자복지법, 아동·여성·노인관련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논의할 것이다.

IV. 가족복지정책과 여성 정체성

국가의 모든 정책은 정책시행의 대상을 국가가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국가가 가족과 가족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관련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은 가족내의 여성역할에 대한 국가의 여성규정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인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성정체성은 국가, 가족, 시장이라는 세가지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는 법·제도·정책 등을 통해 여성정체성을 표출하는 한편, 여성정체성에 근거한 법·제도·정책·기구 등을 결정한다. 시장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장이지만 국가와 가족에서의 여성정체성의 영향하에 성별직종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가족과 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을 통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며, 가족은 시장에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소득을 보장받는 한편 국가의 가족관련정책의 영향을 받으며 다시 가족관련복지정책의 실현 및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그림 3> 여성정체성 규정요인

수 있다.

가족내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전담자,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자, 경제적 책임의 분담자로서 중첩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가족관련복지정책에서의 여성정책성으로 나타나다고 할 수 있다.

1. 가사노동전담자(남성의 피부양자)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남성부양책임자, 여성의 존자라는 전제를 가지므로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이 무급으로 이루어져 전업주부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존재로 규정되며, 취업여성의 경우 잉여노동력으로 여겨져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과정에서 공적영역, 사적영역으로의 분화와 함께 남녀의 성적인 분리가 수반되어 남성의 생산활동 참여와 임금획득, 여성의 부불가사노동 종사를 통하여 남성의 재생산력 유지에 기여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별노동분업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남성의 노동을 보조하는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양성간의 노동분업과 여성노동의 상대적 가치저하는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영역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노동은 주변적이고 보조적인 위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가사노동이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가족구성원을 위한 봉사적 행위로 취급된다면 여성의 가사노동과 보살핌노동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게 되며 여성은 경제무능력자로 여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여성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을 무급노동(unpaid work)으로 간주함에 따라 경제 및 사회발전, 사회구성원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활동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가 가시화되지 못한다. 이와같이 가족속에서 여성의 역할이 인정되지 못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전업주부에게 독자적 연금수급권(personal right)이 부여되지 않은 등 공적 경제

활동을 통한 임금크기를 복지수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각종 제도에서 여성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가사노동가치가 재산의 1/3만정도 밖에 인정되지 않아 여성에게 불리하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장보험 수급 시 가사노동가치 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전업주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의 부불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가사노동가치가 각종복지에서의 수혜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의 빈곤화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산정기준을 상해, 이혼, 사망 등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월가치평가액의 산정 고시를 통해 상해보상, 이혼시 재산분할, 조세제도에서 부부간 상속세 및 증여세, 사회보험에서 전업주부 보험료 산정 등에 적용하고 고시금액을 공공부문에서 활용하고 민간부분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재생산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독립적 존재로 인정되게 되므로 보험수혜와 이혼시 재산분할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취업의 증가는 여성의 역할이 부양서비스 제공자에서 경제적 부양제공자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노동시장 구조는 가사노동자로서,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정경제책임자가 아니라 보조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이 종사하는 일도 가정내 여성역할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별직종분리현상에 따라 동일한 직종의 경우 남성상위관리자, 여성하위관리대상으로 위치지워지는 한편 여성취업의 비정규직화 경향으로 인한 임금차별로 이어져 국민연금수급 등 복지혜택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위치지워진다. 이러한 상황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노동시장논리에 의하여 여성을 잉여노동력으로 간

주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취업은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형성함에 따른 복지혜택에서의 불이익도 문제지만 취업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노동과 효율적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가사노동에도 매달려야 하는 이중부담에 놓여진다는 사실도 문제이다. 미래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때 가정이 노동의 장소인 여성의 삶의 질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취업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자녀양육의 전담자

여성은 전통적으로 가정교육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전업주부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모성보호차원에서 육아휴직이나 보육기관의 활용 등 자녀양육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여성에게 부과되는 상황이다.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여성의 재생산 기능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혼여성은 남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여성이 자녀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한다고 할 수 있다(박민자, 1995, 145-166). 또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성을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 규정하여 여성의 복지를 자녀유무나, 연령(부양능력)에 연계시키고 있다. 즉 여성은 모성을 수행하는 한에서만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일차적 아동양육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이재경, 1996).

여성을 이와 같이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적 역할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측면도 역시 '가족에 의한 복지'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가족복지정책내에서 여성역할을 사적영역에 한정하는 한편 국가의 가족복지에 대한 책임이 사적 영역, 특히 여성에게 떠넘겨지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과 자녀자신

의 직업적 포부수준 및 성별직종분리의식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취업여성의 경우도 자녀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기혼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항은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모성보호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모성보호정책은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여성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에서는 미흡한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성보호정책과 보육시설을 확대하려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되면서 제도화된 육아휴직제도(현 90일간의 유급휴직) 및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1995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공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여야 하나 정규직에 고용된 여성은 여성근로자의 약 10%에 불과하다는 점 등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외에도 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수행을 위한 취업중단은 노동시장에서의 재고용을 힘들게 하거나 취업중단기간 동안의 직업내 변화추세에 대한 적응 문제, 승진을 위한 경력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퇴직 후 연금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현행 가족복지정책에서 모자복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한부모가족 가운데 6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양육비는 부자가정에 20여만원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자녀양육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자가정은 남성이 자녀를 양육하므로 다른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모자가정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여성이 자녀양육전담자라는 전제에서 가족복지정책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부담

이 가족복지정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부양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경제적 부양 제공자의 역할을 둘다 만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갈등을 야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대부분 전업주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회의나 운영위원회의 등이 교사의 근무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취업주부나 아버지의 참여는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에 사용할 준비물, 과제물의 학부모 도움 요구 등에서도 자녀양육에 전담자는 전업주부 여성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관련복지정책에서 전제로 하는 자녀양육전담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노인부양의 책임자

한국가족에서 수행하는 노인부양의 문화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효”사상은 유교적 가부장제와 함께 해 온 규범이다. 전통사회에서 노부모부양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양육보다 더욱 강조되는 의무였으며 이러한 규범은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기회를 통하여 중요한 도덕적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효사상이 오늘날에는 도덕적 명제로만 남아있고 노인부양은 개별가족단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사회보장의 급여내용은 가족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정되어 가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이 있는 경우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노인들은 장기적이고 완치가 힘든 만성적 질병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65세 이상 조사대상 노인 가운데 86.7%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의 장기적 부양을 필요로 한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는 출산율감소로 노인부양이 가능한 성인자녀의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육체적 정서적 부양자인 여성의 노

동을 더 강도높게 요구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같이 노인부양은 가족부양, 특히 무보수 여성보살핌노동을 전제로 하는 가족내 복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연령이 많거나 병이 들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는 가족내 보살핌노동을 전담하는 존재로 노인부양을 위한 또 하나의 보살핌노동 부담이 부가되며 이것이 도덕적 관습과 의무감에 근거한 무보수 노동이기 때문에 보수가 주어지는 노동만큼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또한 부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자신의 시간을 육체적, 정서적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육체적 노동부담의 가중과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취업여성인 경우 노인부양의 의무가 지워지게 되면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부양책임수행을 위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거나 부양역할을 대신 수행해 줄 복지서비스종사자를 구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는 두가지 역할에 대한 병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그로 인한 부담을 해결하기 힘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겨난다.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취업여성은 자신의 경제적, 직업적 기회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역할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하는 취업여성의 입장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부양을 위해 작업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나 가사휴가 또는 의료휴가제도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난 가족구조의 변

화에 따른 가족속에서의 여성정체성,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가족관련 복지정책에 나타난 여성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사회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가족유형과 기능, 가족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달라졌지만 가부장제라는 큰 사회적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규정성도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던 가족내 여성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가족내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 자녀양육의 책임자, 노인부양의 책임자, 정서적 안정의 제공자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속에서의 여성정체성은 가족관련복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국가의 여성규정성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현행 가족복지정책은 요보호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적극적, 종합적 의미의 가족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법, 각종 보험규정, 모자복지법 등 가족복지관련정책에 나타난 여성정체성을 분석하였다.

가족관련복지정책에서의 여성은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노인부양의 책임자로서 위치지워져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로 가부장적 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가족속에서 규정된 여성정체성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의 피부양자로 위치지워진 여성은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연금수급권, 보험에서의 보상, 이혼시 재산분할, 모성보호의 문제 등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받지 못함에 따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 가족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여성을 빈곤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는 국가의 여성규정성이 가부장인 남성에게 의해 부양되는 존재이며, 사적·재생산 영역의 무급가사노동, 자녀양육의 전담자, 노인부양의 책임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성의 노동행위의 장소가 가정이건 사회이건, 노동의 결과가 사회에 직접적·생산적으로 산출되건 간접적·재생산적으로 산출되건 여성이 인격체로 인정된다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가치가 각종

상해나 사회보장 및 법률제도에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즉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하여 다양한 가족유형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 종합적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인지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생활과 고용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성인지적 가족복지정책이 입안되더라도 성평등적 의식이 부족하다면 정책과 제도가 담고 있는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제도와 정책이 인간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므로 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성인지적 가족복지정책의 입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가족복지정책형성과 성평등적 가족형성을 위한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2. 제언

미래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은 여성의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으며 여성의 인권으로서의 삶의 질 증진, 양성간의 평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가족복지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산정기준을 고시하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사노동종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평가·환산되지 않으면 경제적 무능력자로 여겨질 뿐 아니라 남편의 피부양자에 위치지워져 가족내 권력 작용에서 열등한 조건에 놓여 성평등한 가족관계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직종분리현상과 계도화(ghettization), 여성의 비정규직화 경향을 극복해야 한다. 여성은 직업세계에 진출해서도 재생산 영역에

관련된 노동이 사회화함에 따라 생겨난 직종에 종사하며, 동일한 직업세계에 진출한다해도 남성은 상위 관리직에 여성은 하위 관리대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성은 잉여노동력으로 여겨져 남성은 정규직에 고용되는 반면 여성은 시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임금 불평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각종 복지제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생산적 복지(workfare)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가족복지가 일시적, 부분적으로 제공되기 보다 영구적 종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메꾸어 주는 것 보다 부족한 부분을 배꿀 수 있는 능력의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생계보조금지급보다 취업에 필요한 능력함양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직업세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도권교육의 접근기회 뿐 아니라 직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도 국민연금의 독자적 수혜권, 보장성 보험수급권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때 여성의 가사노동가치산정기준에 준하여 환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는 직계혈연, 초혼, 핵가족을 전형적 가족으로 규정하고 남성 부양자, 여성 피부양자 모델을 전제로 하므로 전형적 가족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모자 가정이나 노인여성가정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족부양을 전담한 여성의 인권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위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위에 제시된 네가지 제안은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통해 현재의 성차별적가족 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과 제도는 현실변화를 이끌기 위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제도의 장점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제현상의 저변에 깔린 의식의 전환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성인직적 가족복지정책의 다권과 성평등적 가족형성을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위의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성들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이 친여성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족복지정책에서는 가족을 위한 무급의 희생과 봉사의 의무를 지닌 여성을 전제로 했으나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가족복지정책에서는 의무와 함께 권리도 향유하는 여성을 전제로 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연마한 여성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가사보조서비스, 육아 및 노인부양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통하여 사회발전이 가족복지에 기여하고 성평등적 가족의 형성이 사회민주화와 인간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과 사회, 12, 209-232.
- 공세권 외(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경(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노인 부양문제를 통해 본 노인복지와 여성복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학, 34(1), 65-84.
- 김미혜 외(2000).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성천(2000).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재조명: 개혁방향의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5, 71-102.
- 김수정(2001). 복지를 젠더적 관점에서 읽기: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조흥식 외 엮/여성복지학. 쿨라빅. 테라사 외 엮: 한국여성정책연구회 譯 <書評>. 여성과 사회, 12, 233-241.
- 김영란(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3), 551-583.
- 김재인, 김성경, 권미수(2000).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

- 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준영(2001). 주부 가사노동가치평가.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및 제도적 연구. 1999 생활시간 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통계청. 1-95.
- 김태홍(2001). 무급노동의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여성부·UNDP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
- 문숙재, 윤소영(1997). 가사노동의 정책적 반응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41-52.
- 박민자(1997).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남녀고용 평등법을 중심으로. 가족학 논집, 9, 191-212.
- 박정은, 윤영숙(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의(2001).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의(2000).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신혜섭(2000). 여성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고찰. 동덕여대 생활과학 연구, 5, 112-124.
- 앤 쇼우스탁 사순 편저(1989). 여성과 국가: 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 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 양옥경(2000). 한국 가족개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 69-99.
-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이소희 외(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 이승희(1993). 국가. 자본주의. 여성문제: 가부장제 국가론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경제와 사회, 겨울호. 한울.
- 이영분, 양심영(1999). 가족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 서비스의 대응. 한국가족복지학, 3, 117-148.
- 이재경(1996).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가족철학. 이화여대출판부.
- 이진숙(2000). 여성·가족·여성복지와 가족정책적 과제 - 가족내 보호노동(Pflegearbeit)을 중심으로. 2000년후기사회학대회발표문 요약집. 67-74.
- 이효재(1996). 한국 가부장제와 여성. 여성과 사회, 160-176.
- 정경희(1997). 여성의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 지원정책. 보건복지포럼, 5, 31-40.
- 정무장관(제2)실(1997). 가사노동가치 평가기준과 제도화 방안. 정부장관실.
- 정영금, 문숙재(1998).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본 가정노동 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6(10).
- 조 형(1993).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 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조홍식 외(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 최흥기(1993). 유교와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교육과학사.
- 최혜경(1995). 21세기를 대비한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정책, 2, 225-240.
- 한국여성개발원(2000). 2000 여성통계 연보.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8). 민사판례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가치평가 연구 -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한도숙(2000). 북구 국가들의 여성정책: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한혜경(2000). 빈곤의 여성화와 생산적 복지. 여성이론 3, 39-55.
- 함인희(1995).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통계청(200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Bank, Barbara & Peter M. Hall (1997). *Gender, Equity And Schooling: Policy and Practice*, NY: Garland Publishing.
- Benhabib, Seyla (1987). *Feminism as Critique: On The Politics Of Gender*,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nsonsmith, D. (2000). *From Widows to Welfare Queens: Race and Gender Construction In Welfare Reform*,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0 Annual Meeting In San Jose, California.
- Boje, Thomas, P. (2000).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 A New Division of Labour*, Routledge. Published

- Christopher Pierson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 Pr.
- Esping-Andersen, G. (2000).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s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0.
- Gordon, Linda (1990). *Women. The State and Welfare*, Univ of Wisconsin Pr.
- Helga Maria Hernes (1987). *Welfare State and Wome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Oxford: Oxford Univ. Pr.
- Judo, Ellen R. (1994). *Gender And Poverty In Rural North China*, Stanford Univ Press.
- Orloff, 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303-28.
www.bupdori.com/04-10-05.htm

(2002년 10월 29일 접수, 2003년 2월 6일 채택)